

在日外國人 참정권



田 中 宏 (일본 一橋大學 명예교수)



일본헌법은 참정권에 대한 두 가지 조문이 있다. 제15조 “공무원을 선출하고 그것을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다.” 그리고 제93조의② “지방공공단체의 장, 의회 의원 및 법률에서 정한 그 밖의 관리는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져 있다. 2008년 말 현재 등록 외국인 약 221만 명은 전혀 일본의 정치에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재일외국인은 위의 표에서와 같이 221만 명으로, 이는 ‘영주자’ 91만 명, ‘비 영주자’ 130만 명으로 대별할 수 있다. 또 ‘영주자’는 재일코리안 등 구 식민지출신자 및 그 자손인 ‘특별영주자’ 42만 명과, ‘일반 영주자’ 49만 명(중국인 14만 명, 브라질인 11만 명, 필리핀인 7만 5천 명)으로 나눠진다. ‘비 영주자’는 3년 이내의 ‘재류허가’가 부여되어, 정기적으로 재류상황의 심사를 받아 재류하는 외국인들이다. 한편 영주자는 정기적인 재류심사가 불필요한 외국인들이다.

비영주자 가운데 다수는 취업에 제한이 없는 ‘정주자’와 ‘일본인의 배우자 등’ 이

〈도표 1〉 재일외국인 개황

국적	총 수	영주자		비영주자		
		일반영주	특별영주	定住	일본인의 배우자 등	기타
중국	655,357	142,469	2,892	33,600	57,336	419,080
코리안	589,239	53,106	416,309	8,722	21,990	89,112
브라질	312,582	110,267	26	137,005	58,445	6,839
필리핀	210,627	75,806	42	35,717	49,980	49,072
페루	59,723	29,976	5	18,969	5,278	5,495
기타	389,888	80,432	1,013	24,485	52,468	231,472
합계	2,217,426	492,056	420,305	258,498	245,497	801,470
		912,361	(41.1%)		1,305,065(58.9%)	

* 출처 : <http://www2.interbroad.or.jp/shimada/vote.html> (검색일 2009년 9월 20).

다. (이와 같은 취업에 제한이 없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은 1만 7천 명이나 도표 1에 서는 생략) ‘定住者’는 일계인(일본인의 2세, 3세)이며, 브라질인이 특히 많은 것은 그 때문이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은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으로, 브라질인, 중국인, 필리핀인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일코리안은 지금은 8할이 일본인과 결혼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특별영주자이기 때문에, 이 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에서의 영주가 인정되고 있는 91만 명, 그리고 취업에 제한이 없는 日系人과 일본인 배우자를 합한 약 50만 명은 누구나 일본에 생활의 본거를 두고 있는 듯하다.

20여년 전, 1988년 말의 등록외국인 수는 94만 명으로, 이 20년간에 거의 2.4배로 증가하였다. 89년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 개정으로, 일계인은 일본에서의 취업을 자유화한다고 하는 특별조치가 취해져, 지금은 약 40만 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88년 말에는 브라질인과 페루인 합계가 5,023명에 지나지 않았다. 브라질인이 가장 많은 것은 愛知현으로 약 8만 명, 다음이 靜岡현으로 약 5만 명으로 이 2현이 가장 많다. 愛知는 토요타가, 靜岡에는 혼다, 야마하, 스즈키가 있고, 그 아래 하청, 재하청업체들이 취업이 자유화된 日系人을 대량으로 흡수한 것이다.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자동차 산업을 생각할 때, 과거의 전통 공업인 西陳織을 조선인이 지탱했던 일을 생각하게 한다.

재일코리안과 참정권

외국인의 정치참가 문제를 생각할 때, 그 나라의 국적제도가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세계의 국적법은 자식들의 국적을 부모의 혈통에 의해 결정하는 혈통주의와, 자식의 국적은 그 출생지의 국적을 취하는(부모의 국적은 관계없이) 출생지주의로 대별된다. 일본은 전형적인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몇 세대를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미 대륙으로 대표되는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외국인의 자녀는 출생지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태어난 2세는 이미 외국인이 아니다. 참정권문제도 1세대에 국한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특별영주자인 제일1세대인 재일코리안 41만 명이 가장 큰 그룹이다. 특별영주를 정한 법의 정식명은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근거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이하 ‘입관특례법’)이다. 즉 대일평화조약이 발효한 1952년 4월 28일, ‘일본국적’이 없어지고 ‘외국인’으로 선고된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 이른바 특별영주자인 것이다.

식민지의 분리 독립에 따른 국적처리에 대해서는 확립된 국적법 내지 관습법은 없는 듯하다. 일본의 경우, 포즈담선언 수락으로 조선이 독립한다고 하는 경과를 거쳤기 때문에 알제리아해방전쟁에 의해 프랑스로부터 독립이 달성된 것과는 크게 다르다. 일본의 과거 동맹국 독일도 인접국 오스트리아를 병합했으나, 독일의 패전에 의해 오스트리아가 독립을 회복했으며, 일본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의 발효 전에, 법무부민사국장 통달에 의해, 재일코리안은 일본국적을 잃고, 외국인이 될 것을 선언했다. 독일은 동서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평화조약 체결에 이르지 못했다. 서독은 1956년 6월, 국적문제규제법을 제정, 병합에 의해 부여된 ‘독일국적’은 오스트리아 독립 전날 모두 소실된다고 규정한 한편, 독일 국내에서 거주하는 오스트리아인(재일코리안과 같은)은, 의사 표시에 의해 소실시로 소급된 독일국적을 회복할 권리를 가진, 즉 ‘국적선택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일방적으로 ‘외국인’으로 선고, 이후 일본국적을 취득하려면 ‘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정권은 일방적으로 일본 측에 맡겨지고 있다. 일본국적법에는 ‘일본국민이었던 사람’ 및 ‘일본의 국적을 잃은 사람’은 귀화요건이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나, 앞서의 통달은 특히 재일코리안들은 이들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즉 보다 엄격한 귀화의 장벽이 부과되었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한일회담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재판으로 전면공개가 실현됐다. (일본에서도 같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벽이 두텁다) 한국 측에서 공개된 한일회담 문서 속에, ‘재일한국 교포들의 국적에 관한 협정요강’이 있고, ‘1, 전반적 국적회복의 경우’, ‘2, 국적선택의 경우’의 2안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제1안의 끝부분에도 ‘본안의 수정안, 일본국은, 제1조의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해서, 본 조약 발효 후 3년 이내에 일본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측은 국적선택방식도 생각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일본 측이 그 것을 거부하였을 것이다.

참정권을 원한다면 ‘귀화하면 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과거 외국인등록때의 지문날인의 경우도, 大阪麻警 외사과장은 “‘지문날인’이 싫다면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일본으로’ 귀화하면 된다.”고 한마디로 말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金敬得씨가 사법연수소에 입소를 신청했을 때도 귀화하도록 종용받았다. 이때 김씨가 한국적으로 입소를 요구한 결과, 일본의 최고재가 종래의 방침을 고쳐 입소의 길을 열었고, 지금은 100여명의 재일코리안 변호사가 탄생하고 있다.

‘귀화론’은 귀화하지 않는 외국인이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낙착되게 된다. 귀화론에 있어서의 또 한 가지 의문은, 외국인이 귀화한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그 사람의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참정권 논의에서 자주 ‘국적은 충성심의 증거’라는 말을 한다. 법무성의 귀화심사에서 일본국에의 충성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아니면 귀화허가 후 일정 시간을 두고, 어떤 테스트에 합격하고 부터 참정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 묘한 도그마에 얹매여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주민’

참정권에 대해 생각할 때, 국정과 지방의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해외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전혀 선거의 투표가 불가하였으나, 재판투쟁 등으로 2000년의 선거부터 재외투표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2012년의 대통령선거부터 가능) 그러나 그것은 중, 참 양원의 의원선거뿐으로, 지방자치체의 장이나 의원 선거에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왜 그럴까. 현재 외국에 살고있는 일본인들은 약 100만 여명이나, 이들은 일본 ‘국민’ 이기는 하나 ‘주민’ 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국

적에 근거한 국정참정권과, 거주에 근거한 지방참정권을 분리하고 있는 것이다. 재일외국인은 ‘국민’ 이지는 않으나, ‘주민’ 이기 때문에, 지방참정권을 인정받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재일코리안이 지방참정권을 요구하여 大阪地裁에 재소한 것은 1990년이나, 그것에 대해 최고재는 95년2월 청구는 기각했으나, ‘영주자 등으로 거주하는 구역의 지방공공단체와 특별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 대해, ‘법률로, 지방공공단체의 장, 의회 의원 등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조치를 강구할 것인가 아닌가는 전적으로 입법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서도 국정과 지방의 구별이 전제 되고 있다.

외국인참정권을 둘러싼 여러 외국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도표2〉를 참고하기 바란다. 여기서도 ‘국정선거’와 ‘지방선거’로 나누고 있으며, 국정레벨에서 인정하는 것은 거의 없음에 대해, 지방레벨에서 전혀 인정치 않고 있는 것은 일본 뿐이다.

〈도표 2〉 OECD가맹국 개국 및 러시아의 외국인 참정권과 이중국적 상황

국명	외국인 참정권				이중국적	
	국정선거		지방선거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권	피선거권		
호주	△	×	△▲	△	일부 영연방 시민에 국한. 일부 주에서는 기타 외국인에게도 정주를 조건으로 부여	
오스트리아	×	×	△	△	시정촌 및 빈 지역의 참정권을 EU시민에게만 부여. 단체장의 피선거권은 제외	
벨기에	×	×	△	△	피선거권은 EU시민에게만	
캐나다	×	×	△	×	산수카추원주에서 일부의 영연방 시민에게만	
체코	×	×	△	불명	선거권은 EU 시민에게만 부여	
덴마크	×	×	○	○		
핀란드	×	×	○	○		
프랑스	×	×	△	△	EU 시민에 국한	
독일	×	×	△	△	EU 시민에 국한. 주의 참정권은 제외 일부주는 단체장의 피선거권은 제외	
그리스	×	×	△	△	EU 시민에 국한. 단체장의 피선거권은 제외	
헝가리	×	×	○	×		
아이슬란드	×	×	○	○		
아일랜드	△	×	○	○	국정선거는 영국시민에 국한. 대통령 선거는 제외	
이태리	×	×	△	△	EU 시민에 국한. 단체장의 피선거권은 제외	
일본	×	×	×	×		
룩셈부르크	×	×	○	×		

멕시코	불명	불명	불명	불명	피선거권은 EU시민에 국한	○
네델란드	×	×	○	○		○
뉴질랜드	○	×	○	×		○
노르웨이	×	×	○	○		불명
폴란드	불명	불명	불명	불명	EU시민에게는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듯	불명
포루투갈	△	×	△	△	EU시민과 포루투갈제국 국민에게만 (상호주의)	○
한국	×	×	○	×		×
러시아	×	×	○	○		○
슬로바키아	×	×	○	○		불명
스페인	×	×	△	△	EU시민 및 노르웨이 국민에게만 (상호주의)	○
스웨덴	×	×	○	○		○
스위스	×	×	▲	▲	일부 주에서는 정주를 요건으로 인정	○
터키	불명	불명	불명	불명		○
영국	△	△	△	△	EU시민에게 지방에만 영연방 시민 및 아일랜드 시민에는 국정에도 부의	△
미국	×	×	▲	▲	메릴랜드주 타코마박시 등에서 부여	○

〈자료〉 국립국회도서관 자료로 작성

* 국회도서관 조사

EU에는 역내에서 상호 지방참정권을 개방하는 조약이 만들어져 있으며, 표에서 △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이기는 하나, EU가맹국이라도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은 ○으로, EU이외의 나라에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도 투표가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은 2005년에 법 개정을 하여, 2006년의 통일지방선거에서는 영주일본인도 1표를 던졌다. 또 이 표에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국적과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2중국적’ 란도 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

일본 정당에서 처음으로 외국인참정권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내건 것은 ‘新黨사키가끼’로, 1994년11월이었다. 그 법안요강에 의하면, ‘5년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지방참정권(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국회제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실제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것은, 최고재 판결 후인 1998년10월, 당시, 다같이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공명, 평화개혁당 등이 공동제안으로 ‘영주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법안’을 제출했다. 그 내용은 ‘영주외국인’에 한해, 그것도 ‘선거권’ 만으로, 피선거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조례의 제정, 개폐, 감사청구, 의회의 해산청구, 의원·장의 해직청구’ 등의 ‘적접청구권’을 인정, 또 ‘투표입회인 등에의 취임자격, 인권옹호위원, 민생위원, 아동위원에의 취임자

격'도 인정하는 것이었다. 즉 인권위원회 등 세 가지의 위원은 '市町村의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각각의 법이 정해져 있다. 동년 12월에 공산당이 제출한 법안은 피선거권도 포함하고 있으며, 그에 수반하여,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되는 공안위원, 교육위원의 취임자격도 인정하고 있다.

야당으로 공동체안한 공명, 평화개혁당은 1년 후인 99년10월, 자민, 자유, 공명당의 3당 연립내각에 참가, 정책협정 속에 공명당의 요망으로 외국인에의 지방참정권 부여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자민당의 의견이 정해지지 않은채, 공명, 자유 양당만으로 2001년1월에는 법안이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에도 법안은 제출되나, 중의원의 해산에 의해 폐안을 반복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경과를 개관하기 위해 <도표3>을 보자.

공명당이 여당의 일각을 차지해, 법안성립의 가능성성이 대두되었기에, 일부에서는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은 망국에의 제1보'라는 말까지 나돌기 시작했다. 그래서 '참정권을 원한다면 귀화하면 된다.'는 말의 연장선상에서 2001년1월, 여당3당은 '국적 등에 관한 프로젝트 팀'을 발족시켜, 국적취득의 완화를 겨냥한 작업을 추진, 5월 '특별영주자 등의 국적취득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정리했다. (별도개재) 동 법안에는 특별영주자는 법무대신에의 '제출'로 일본국적을 취득한다, 또 국적취득

후의 氏名에 대해서는 '종전의 씨 또는 명을 칭할 경우는 그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자제한도 철폐하고 있다. 상당히 충격적인 안이었으나, 어쨌든 참정권법안이 폐기되면서, 그 후는 참정권이 성립할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화제가 되지도 못했다.

<도표3>에는 A-G까지 7가지의 법안이 있다. 공산당 안은 유일하게 피선거권도 포함하고 있으나, 지금은 의석수가 부족하여 법안제출이 불가능하다. 지속적으로 제안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공명당이나, 그 내용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에 대해, C안 및 F안에는 '외국인등록의 국적 기재가 국명에 의한 것에 국한'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것이 '조선적'을 제외한다는 의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통상 외국인은 여권을 가지고 입국, 그 여권에 의해 외국인 등록의 '국적'란에 국명을 기재하게 된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을 가진 재일코리안은, 입국을 거치지 않고 외국인이 되었다고 하는 역사적 경위가 있어, 법무성은 조선반도 출신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국적란에 '조선'이라고 기재하기로 했다. 그 후, 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에 의해 '한국'의 기재가 증가하나, 조선 표시인체로 있는 사람도 물론 존재한다. 특별영주자는 구식민지 출신자 및 그 자손을 조선반도의 남북, 대만을 가리지 않고 일괄하여 정한 것으로, 이미 20년이나 지난 지금, 새삼스럽게 분단을 내세우는 것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최신의 G안은 대상이 되는 외국을 더욱 축소시켜, 일본국민이 지방참정권을 인정받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에게 한정시킨다고 하는 '상호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도표2>에서 '지방선거의 선거권'란에 ○인이 있는 국가에 한정 된다. 그렇게 되면, 같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면서 선거권 행사에서 '차별'이 생겨나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이 초안에는 내포되어 있던 직접청구권이나 인권옹호위원 등의 취임자격도 제외돼, 아주 초라한 내용이 되고 말았다. 향후 국회에 제출되는 것은 세 가지 안중에 어느 것일까.

<도표2>에도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은 ○인으로 국적에 의한 차이는 없다. 1999년3월, 한국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의 오부찌 총리와의 수뇌회담에서 재일한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부여를 요청함과 동시에, 한국에서도 외국인에 유사한 조치를 검토 중임을 설명했다. 그리고 2000년11월, 한국 국회에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 특례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참정권은 헌법상 내국인만에게 보장된다고 하는 반대론도 나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결국, 2002년의 통일지방선거까지 성

<도표 3>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의 심의과정

제출자	제출연월	결 과	주요내용
A. 민주·공명안	1998. 10	2000. 6 해산으로 폐안	· 각종 직접 청구권을 인정 · 인권위원회 등의 취임 자격을 인정
B. 공산안	1998. 12		· A안에 추가하여 피선거권도 부여, 그에 수반하여 공안위원 교육위원에의 취임자격을 인정
C. 공명·자유안	2000. 1		· A안과 다른점은 외국인 등록의 국적의 기재가 국명에 의한 것에 국한 (조선족 제외)
D. 공명·보수안	2000. 7	2003. 10 해산으로 폐안	· A안과 동일. 2000년 11월 참고인 질의
E. 민주안	2000. 7		· A안과 동일. 2000년 11월 참고인 질의
F. 공명안(구)	2004. 2	2005. 8 해산으로 폐안	· C안과 동일.
G. 공명안(신)	2005. 10	2007. 7 해산으로 폐안	· A안과 다른점은 ① 일본국민에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함. (상호주의), ② 직접청구권에 대해서는 검토사항으로 한다.

* 출전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부여 법안 관계자료』(중의원 조사국 제2특별조사실(2006)을 근거로 작성)

립은 단념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무현대통령 시대에 들어선 2004년1월, 한국에서 성립한 지방자치체의 ‘주민투표법’은 정주외국인에 주민투표 청구권과 투표권을 인정한 것이었다. 일본에서 滋賀県 米原町이 町村합병에 관해 실시한 주민투표 조례에서 처음으로 영주외국인에 투표자격을 인정한 것은, 2002년1월의 일로, 한국보다 조금 앞섰다.

한국의 ‘주민투표법’에서 외국인에 대한 개방이 실현된 것이 좋은 조건을 만든 것 같다. 내가 공동대표의 한 사람으로 있는 ‘정주외국의 지방참정권을 실현시키는 일한재일네트워크’에서는 2005년6월의 일한수뇌회담 전에, 일본의 小泉총리와 한국의 노무현대통령 쌍방에게, 지방참정권의 개방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보냈다. 일본 정부는 응답을 했으나, 한국정부로부터는 ‘민원에 대한 회답’으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이 6월30일 국회를 통과한 것을 알려드린다.’는 답장이 있었다.

같은 해 가을, 동경에서 만난 여당 당수의 발언이 잊혀지지 않는다. ‘한국은 일본보다 내셔널리즘이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참정권개방에 뛰어든 것이다.’라는 것이다. 또 서울에서 참정권 심포지움을 가진 2004년 가을, 한국의 민주노동당 젊은 의원을 찾아갔을 때의 일이 생각난다. “우리 나라는 종래, 화교를 차별, 냉대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를 극복,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기 위해서도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은 꼭 실현시키고 싶다”고.

한국은 지방참정권 뿐 아니라, 외국인과의 공존, 공생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인구가 약 5천만 명, 재주외국인이 백만명으로, 외국인 비율은 일본에 가깝다. 일본의 일계브라질에 비슷한 존재로서 중국조선족이 있다. UN은 인권침해의 방지나 구제를 위해 국내 인권기관의 설치를 각국에 요청하고 있다. 일본도 인권옹호법안이 2002년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다음해 폐안된 채로다. 한국에서는 2001년에 정부로부터 독립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일본의 외국인의 연수, 기능실습제도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사건도 다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같은 문제가 다발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행하지 않고, 2003년2월, 제도의 폐지와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도입 등을 권고, 동년 7월, 외국인고용법이 제정되고, 애매한 연수생제도는 폐지되었다.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치우기본법의 목적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중요정책의 심의,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를 장으로, 관계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치, 재한외국인의 인권옹호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다 언어에 의한 서비스제공이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타의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작년 광복절(8월15일)의 이명박 대통령의 기념연설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북한 동포와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국가 유공자와 내외귀빈, 그리고 1백여만의 외국인주민 여러분…” 일본의 소자고령화는 착실하게 진전, 인구감소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외국인의 존재 없이는 사회가 성립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자국민 중심주의의 사회, 외국인을 소외하는 사회로부터, 외국인, 민족적 마이널리티와의 공존, 공생을 조장하는 사회로 방향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中曾根康弘 전수상은 외국인참정권에 찬성, “내국적인 견지에서 일본의 전도를 개척하는 입장에서 나가지 않으면, 정치가의 기량이 의문시된다.”고 말하고 있다. (朝日新聞 2010년1월27일) 참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기본에 관계되는 것이기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 나는 반대로 지방참정권의 개방을 국가의 기본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특별영주자 등의 국적취득에 관한 법률안」(가칭)

제1조 (취지) 이 법률은 특별영주자 등에 대해 그 역사적 경위 및 일본사회에 있어서 정주성에 입각 일본의 국적취득에 관해 국적법의 특례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 (정의) 이 법률에 있어 「특별영주자 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특별영주자 (입관특례법에서 정한 특별영주자)

2. 특별영주자와의 혼인 또는 양자 중에서 당해 특별영주자가 가진 국적의 취득에 의해 일본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일본에 귀화 후 일본국적을 상실한 자는 제외)으로, 일본의 국적을 상실한 해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

제3조 (계출에 의한 국적취득) 특별영주자 등으로 일본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법무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무대신에 계출함으로써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출을 한 사람은 그 계출을 할 때 일본국적을 취득한다.

제4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계출(생략))

제5조 (국적취득후의 씨명)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한자의 표기에 의한 종전의 氏 또는 名을 사용할 경우는 그 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생략)